

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

2017. 7. 5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13 조 제 2 항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- 아 래 -

1. 이사회 의장 선임 내역

구 분	성 명	직 위
이사회 의장	권희백	대표이사

2.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

- 효율적인 이사회 소집 및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함

3. (現) 선임사외이사

구 분	성 명	직 위
선임사외이사	정규상 ^{주)}	사외이사

주) 2017. 3. 24 일자 선임

4. 이사회 결의일(선임일): 2017. 6. 27 (2017. 7. 1)

한 화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